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

제정 2020. 3. 10.
개정 2020. 8. 4.
개정 2022. 4. 12.
개정 2022. 9. 6.
개정 2024. 9. 10.
개정 2025. 6. 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(이하 “회칙”이라 한다.)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 운영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회비의 종류 및 납부원칙)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운영회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설계업무 운영회비

- 가. 「설계 운영회비 운영 규정」에 따라 회원이 대구광역시 내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납부하는 운영회비
- 나. 「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운영회비

2. 감리업무 운영회비

- 가. 「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」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- 나. 「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- 다. 「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」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
3. 「건축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사용승인 업무 대행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
4. 기타 건축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회비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운영회비는 별표1과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합계 금액이 1,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조(운영회비의 감면) 제2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적은 목의 운영회비는 감면한다.

제4조(미납에 대한 조치) 운영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관 및 제규정, 회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6조(유권해석)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간한도에 관한 규정 적용) 제2조제3항의 연간한도 금액은 회칙 제3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의 납부금액도 합산하여 적용한다.

부 칙(2020. 8. 4. 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허가신청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4. 12. 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2. 9. 6 개정)

제1조 (시행일 등) 이 규정은 2022.09.13. 이후 최초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단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선임한 건에 대해서는 각 회계연도별로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(2024. 9. 10 개정)

제1조 (시행일 등) 이 규정은 2024.09.11. 이후 납부하는 운영회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5. 6. 10 개정)

제1조 (시행일 등)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운영회비의 종류와 납부금액 <개정 2025. 6. 10.>

종 류	납부금액	비 고								
1. 설계 운영회비	- 설계비의 3% 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 - 설계비가 10% 이상 증감된 경우 재산정	「설계 운영회비 운영 규정」 제4조								
2.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운영회비	<table><tr><th>면 적</th><th>운영회비(원/건)</th></tr><tr><td>660㎡ 이하</td><td>100,000</td></tr><tr><td>660㎡ 초과 ~ 1,000㎡ 이하</td><td>150,000</td></tr><tr><td>1,000㎡ 초과</td><td>200,000</td></tr></table>	면 적	운영회비(원/건)	660㎡ 이하	100,000	660㎡ 초과 ~ 1,000㎡ 이하	150,000	1,000㎡ 초과	200,000	「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 제12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3조 [별표 2]
	면 적	운영회비(원/건)								
	660㎡ 이하	100,000								
	660㎡ 초과 ~ 1,000㎡ 이하	150,000								
	1,000㎡ 초과	200,000								
- 설계자가 협회미가입자 또는 타지역 회원인 경우, 시스템 사용 및 종 자료열람에 따른 운영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.										
-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문 대상일 경우, 상기 운영회비의 50%를 적용한다.										
- 자문대상이 대수선일 경우, 면적에 관계없이 최저 운영회비를 적용한다.										
3. 건축물 공사감리 업무 운영회비 (허가권자 지정)	- 감리비의 5% - 기존 감리비의 10%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회비를 최종감리비에 따라 재정산한다. 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	「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」 제9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2조 [별표 1]								
4. 건축물 공사감리 업무 운영회비 (허가권자 지정 외)	- 감리비의 3% - 감리비가 10%이상 증감된 경우 재산정 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	「대구광역시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7조, 「운영지침」 제4조								
5.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운영회비	- 감리비의 3% - 기존 감리비의 10%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회비를 최종감리비에 따라 재정산한다. 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	「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」 제9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2조 [별표 1]								
6.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운영회비	- 허가권자가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3%	「건축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」 제9조, 제10조 및 「시행지침」 제2조 [별표 1]								

※ 상기 운영회비 각각의 건당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며, 회계연도 기준 총합산금액은 1,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각 운영회비를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